

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 보고

사회산업 위원회
전문위원 전영수

이 조례 제정안은 1993년 12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안건명 :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

2. 제안 이유

영유아 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.

3. 주요 글자

- 지방자치단체 공립 보육시설을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,
-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,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점으로 체결하고,
-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종사자의 징계 처분을 남구 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한다.

4. 관계 법령 : 첨부를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영유아의 보호자가 근무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

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
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
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

나. 보육시설의 종류는

- 국공립 보육시설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
- 민간 보육시설 -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한 시설
- 직장 보육시설 - 여성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
가진 사업주가 설치한 시설
- 가정 보육시설 - 입소 아동 11명 미만으로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
준하는 곳에 설치한 시설

다. 새마을 유아원은 유아교육진흥법 제8조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
으므로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 및 영유아 보육법 부칙 4조 새마을
유아원에 대한 경과 조치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인정받았음.

라. 본 조례안 제7조(위탁운영기간) “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
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”에 있어 위탁 운영자와 연령
제한도 없으며 기간 3년 후 재계약의 명시가 없으므로 살펴볼 필요가
있다고 사료됨.